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18호(2025.12.24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1월 27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고시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.

별표1의 일부를 별지2, 별지3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

별표1의 약제 중 별지4, 별지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.

별표1의 약제 중 별지6에 기재된 삭제 품목의 상한금액을 변경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: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
2.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8년 2월 1일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‘별지4’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